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2. 7. 4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안 제16조제2호의 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5호를 삭제함.(안 제2조)

나. “여성친화적 도시” 를 “여성친화도시” 로 함.(안 제4조)

다. “산업단지” 를 “산업단지 등의” 로 함.(안 제12조)

라. “시설” 을 “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” 으로 함.(안 제16조제2호)

마. 제목 “(설치)” 를 “(위원회 설치)” 로 하고, “위원회의 역할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” 로 함.(안 제21조)

바. “중앙정보협력” 을 “중앙정부 협력” 으로 함.(안 제22조제5호)

사.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” 로 함.(안 제23조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안 제4조 중 “여성친화적 도시” 를 “여성친화도시” 로 한다.

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단지” 를 “산업단지 등의” 로 한다.

안 제16조제2호 중 “시설” 을 “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” 으로 한다.

안 제21조의 제목 “(설치)” 를 “(위원회 설치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“위원회의 역할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” 로 한다.

안 제22조제5호 중 “중앙정보협력” 을 “중앙정부 협력” 으로 한다.

안 제23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</u>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<u>도시기반시설</u> : 도로 및 교통, 공원 및 녹지, 산업 등</p> <p>나. <u>공공이용시설</u> : 사회복지, 공공시설 등</p> <p>다. <u>주거단지</u> : 단지조성, 주택내부, 공동체 프로그램 등</p> 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여성친화적 도시</u>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, 관련 단체, 전문가,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도시기반시설)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, 공원 및 녹지,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16조(여성능력개발 효율화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여성친화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도시기반시설) ----- ----- 산업 <u>단지 등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6조(여성능력개발 효율화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<p>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 훈련 지원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제21조(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」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제2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·자문·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<u>중앙정부 협력</u>에 관한 사항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23조(구성 등)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임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」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<u>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</u></p> <p>-----</p> <p>3.·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21조(위원회 설치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역할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」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.</p> <p>제2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중앙정부 협력</u>-----</p> <p>6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23조(구성 등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」</u>----- -----.</p>
--	--